

2013. 6. 13.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안 번호 | 안건명 | 제안자 (제안설명) | 비고 |
|----------|---------------------------------------|-------------------|----|
| 1511 |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상수도과 (상수도과장) | |
| 1526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 |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안 건 명 | 제 안 일자 | 회 부 일자 | 상 정 일자 | 의 결 일자 | 제안설명 | 비고 |
|---------------------------------------|--------|--------|--------|--------|--------|----|
|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15 | 5.15 | 5.22 | 6.12 | 상수도과장 | |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5 | 6.5 | 6.12 | 6.12 | 환경정책과장 | |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2012. 4. 18.) 요구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②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야생동물 때문에 본 농작물 피해 보상과 더불어 인명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상 기준 등을 정하고, 유해 야생동물 자율 구제단과 임시보호소 설치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관리비용 부담 방법 개선 (제14조제3항 단서)
 -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2]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 인명피해 보상 기준(안 제7조)
- 나. 인명피해 보상 지급 제외(안 제8조)
- 다. 농작물 등 피해 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안 제10조)
- 라.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제외(안 제11조)
- 마. 위원회 설치(안 제12조)
- 사. 야생동물 자율 구제단 운영(안 제15조)
- 아. 임시보호소 운영(안 제1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분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신규 세대에 대한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요구(2012.4.18.) 및 환경부장관 조례 개정 요청(2013.2.19) 사항을 반영 하는 것으로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외에 입회비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 됨.

②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농작물피해 뿐 아니라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주거지 및 도심출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구제단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또한 본 조례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의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부결 사유였던 조례 제정목적(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과 배치되는 내용의 자율구제단의 “야생동물 구조 활동지원”

부분을 삭제하여 제정목적에 부합토록 하였으며,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범위를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다만, 조례안 제10조의 피해 금액 산정 방법에 있어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금액 산정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득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안 제14조에 협의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분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를 대표하는 협의회는 없음

(2) 질의: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마을에서 물을 공급안하면 제지 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답변: 없음.

②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질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보험적용 여부?

답변: 보험 가입하지 않음, 관련 규정에 의거 산출

(2) 질의: 안 제7조의 치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은 보상금이 아니지 않나?

의료비 지원에 불과하며 보상금이라 하기엔 미미하다 보여 짐.

답변: 보상기준을 치료비의 본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임

(3) 질의: 안 제10조 제4항의 피해예방방설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50%만 할시 예방시설에 대한 보조 요청이 많을 것으로 우려 됨.

답변: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은 본인이 설치하는 것이 원칙 임.

6. 심사결과

①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②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7. 복 임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정안 | 수정안 |
|---|---|
| 제10조(피해 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 ① ~④(생략) <u><신설></u> | 제10조(피해 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 ① ~④(개정안과 같음) <u>⑤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u> |